

의 정 정 보

2007 - 4

4. 10

1. 최근 선거법 관련 질의·회신 자료	1
2. 최근 주요 제·개정 법령	7
3. 2007년 중앙부처 주요업무계획	26
4. 4.25재·보궐선거 관련	42
<부록1> : 1/4분기 의정자료실 도서구입 현황	45
<부록2> : 행복한 책읽기	51

최근 선거법 관련 질의·회신 자료

1 휴대전화문자발송프로그램 임대료 등의 보전 관련

《질 의》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금번 2007년 4월 25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에서 후보자가 당사의 휴대폰문자발송프로그램 등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대료 및 통화료 등이 선거비용 보전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리오니 빠른 처리 부탁드립니다.

※ 프로그램 개요 : 당사의 휴대폰문자발송프로그램은 휴대폰에 프로그램을 내장하여 문자를 발송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통상적인 휴대폰의 동보발송이 20개로 한정되어 있으나 본 프로그램은 1,000개 이상을 발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며, 또한 컴퓨터장치, 인터넷, 웹상과도 전혀 연결되지 않은 상태의 프로그램이며 별도의 장비도 필요치 않는 휴대폰만을 활용한 대량발송프로그램임.

- 질 의 사 항 -

1. 당사 소유의 휴대폰에 위와 같은 프로그램을 내장하여 후보자에게 임대할 경우 휴대폰과 프로그램의 임대료가 선거비용 보전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프로그램만을 임대할 경우 프로그램 임대료가 선거비용 보전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위의 휴대폰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송한 문자발송비용 등 통신요금이 선거비용 보전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007. 3. 16. (주)세종비즈앤리서치 대표이사 윤중세 질의)

《답 변》

문 1 내지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제2항제9호에 따라 시외전화·이동전화에 건 통화료 및 정보이용요금은 보전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이동전화를 이용하여 이동전화에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은 위 규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이동전화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비용이나 이동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하기 위하여 구입 또는 임차한 이동전화·문자메시지발송프로그램 비용은 선거비용 보전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2007. 4.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② 국회의원의 민원상담 신문광고 등

《질 의》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바랍니다.

본 의원실에서는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국회의원이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매주 특정일·특정시간에 한해 국회의원사무소에서 민원상담을 받는 민원상담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민원상담실(가칭) 운영과 관련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 귀 위원회의 공식입장을 참고하고자 하오니 답변바랍니다.

1. 특정일·특정시간에 주기적으로 민원상담을 접수받는다든 사실을 지역구민에게 홍보하기 위해 지역신문에 관련 사실을 광고하는 행위가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2. 민원상담실 운영과 관련하여 현수막 및 벽보 등 외부게시물을 부착하는 행위가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2007. 3. 22. 국회의원 강창일 질의)

《답 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민원을 청취하기 위하여 민원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전 180일 전에 신문에 광고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공직선거법」 제93조에 위반될 것임.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국회의원의 직·성명을 표시한 민원상담 고지현수막·벽보 등을 국회의원사무소 외에 거리 등에 게시·첩부하는 때에는 행위시기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0조·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2007. 4.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③ 지방자치단체의 기자간담회등 개최시 식사제공 관련

《질 의》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구에서는 아래와 같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자문을 구하고자 이 글을 올립니다.

1. 구정소식지 객원기자와의 정례간담회시 업무추진비로 오찬경비를 집행할 경우 선거법 위반여부
2. 언론기관 및 출입기자와의 정례간담회시 업무추진비로 오찬비를 집행할 경우 선거법 위반여부
3. 시정홍보위원과의 정례간담회시 업무추진비로 오찬비를 집행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질의 (2007. 2. 21. 울산광역시북구청장 질의)

《답 변》

1. 문 1·3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촉된 객원기자·시정홍보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회의개최시 수당 기타 식사·교통비 등 실비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는 급부와 반대급부간 균형을 일탈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임.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임. (2007. 3. 2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4 정당의 선거법 위반행위 제보자에 대한 포상 관련

《질 의》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정당 활동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하오니 답변 바랍니다.

1. 한나라당 또는 한나라당 대선후보 및 대선 예비후보에 대한 선거법 위반내용(비방·흑색선전 등)을 발견하여 제보한 자 중 실제 선거법 위반으로 확인된 내용을 제보한 자에 한해 소액의 상품(예, 상품권 또는 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답변 바랍니다.
- 기 간 : 상시
2. 위 1의 문의사항이 가능하다면 제공 상품의 금액 등 제한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2007. 3. 8. 한나라당 사무총장 질의)

《답 변》

귀문의 경우 정당이 선거법위반행위 제보자에게 상품권 또는 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등’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135조에 위반될 것임. (2007. 3. 2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5 국회의원의 전시회 공동개최 관련

《질 의》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 “중원문화역사인물기록화제작사업추진위원회”는 민간단체로서 충주 지역의 역사와 관련한 그림을 제작하여 “중원역사인물기록화전시회 (일시 : 4월 중 ~ 하순경, 장소 : 충주)”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동 단체의 사업에 애정을 가지고 지원하여온 국회의원(지역구는 충주이며 동 단체의 고문임)이 동 전시회를 공동개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2. 공동개최를 통해 행사를 알리는 통상적인 범위내에서의 홍보물(고지 현수막, 개막식 초청장, 행사팸플릿 등)에 공동주최자의 자격으로 “국회의원 ○○○”를 표기할 수 있는지 여부
3. 행사공동개최가 가능한 경우 국회의원이 공동주최자로서 실제로 그 행사를 개최하면서 부담하여야 할 행사개최비용의 일부(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양측이 부담하는 비용임. 예를 들면 5:5 정도)를 국회의원의 정치자금으로 부담해도 무방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 3. 7. 국회의원 이시종 질의)

《답 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다만, 전시회 개최과정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되어서는 아니될 것임.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행사의 공동주최자로서 국회의원의 직명·성명을 표기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이 경우 국회의원의 직명·성명이 표기된 고지현수막을 행사장 입구나 내부에 게시하는 외에 거리에 게시하거나, 초청장을 귀 단체의 회원이나 그 행사와 관련있는 한정된 자에게 발송하는 외에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발송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3.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2007. 3. 1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5 종친회명의로 장학금 지급 관련

《질 의》

종친회 장학금 지급과 관련입니다. 파평윤씨종친회에서 매년(20년간) 장학금을 종친회 회원자녀 중에서 4명 정도를 선발하여 종친회 정관에 근거하여 10~20만원정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 강화군의회의원을 지냈던 사람(앞으로 강화군 지방의회의원선거에 계속 나올 예정)이 회장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종전에 주었던 장학금을 종친회 명의로 계속 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파평윤씨종친회 회장의 공직선거 입후보예정지역에는 ○○명의 종친회회원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2007. 3. 7. 오영식 질의)

《답 변》

귀문의 경우 종친회가 정관등의 규정에 따라 종친회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온 장학금을 그 종친회의 명의로 제공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다만,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 이하 같음)의 명의를 밝혀 제공하거나 후보자가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4조에 위반될 것임. (2007. 3. 1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자료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www.nec.go.kr/>]

최근 주요 제·개정 법령

①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대통령령제19985호, 2007.4.4공포]

1.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8025호, 2006. 10. 4. 공포, 2007. 4. 5. 시행)됨에 따라 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 단위 및 기능을 조정하고,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절차를 구체화하며, 전자기록물의 관리절차를 체계화하고, 기록물의 공개·열람을 확대하는 등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록물관리기관 설치단위 및 기능의 조정(안 제6조제2항, 제9조 및 제10조)

- (1)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 이관받은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 및보존분담을 위하여 중간관리시설을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고,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공동설치에 따른 절차의 마련이 필요함.
- (2)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중간관리시설을 설치하여 보존기간 30년 이하인 기록물로서 공공기관 또는 폐지기관으로부터 이관받은 기록물을 관리하도록 하고,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공동설치·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중앙기록물관리기관과의 협의사항 등을 구체화하고, 행정체계를 반영하여 기록관의 설치 단위를 재조정함.
- (3) 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단위 및 기능의 조정으로 기록관리기반이 마련되고 내실 있는 기록물관리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됨.

나.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운영의 내실화(안 제12조 내지 제15조)

- (1) 국가기록관리위원회 및 소속 전문위원회·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절차의 구체화가 필요함.

- (2)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도록 하고,전문위원회의 위원을 9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복수의 전문위원회 관련 사항 및 특별한 사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 (3)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기반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다. 기록물 생산의무의 확대(안 제16조 내지 제19조)

- (1)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생산·등록 관리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생산되는 조사·연구서 또는 검토서와 회의록, 시청각기록물 등의 생산의무 부과 확대가 필요함.
- (2) 기록화 및 기록관리 대상 범위를 구체화하고, 회의록의 작성 범위를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등이 참여하는 회의로 확대하며, 생산의무부과 확대에 따른 제도적 보완으로 주요 회의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에 대하여 생산후 15년의 범위 내에서 비공개 보호할 수 있도록 함.
- (3) 기록화 및 기록관리 대상의 확대, 주요 정책 기록물의 생산·관리기반의 구축으로 각급기관의 기록관리업무가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비공개가 필요한 주요회의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에 대한 비공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생산의무가 부여된 기록물의 생산 및 등록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라. 기록물 관리 절차 강화(안 제20조 내지 제24조)

- (1) 전자정부에 부합하는 기록물의 생산·등록·분류·편철등 기록물관리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절차 및 수행업무의 구체화가 필요함.
- (2)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기록물의 생산·접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기록관리기준표에 따라 기록물이 분류될 수 있도록 함.
- (3) 전자기록물의 생산 환경에 부합하는 기록물 등록·분류·편철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각급기관 기록물의 관리업무가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됨.

마. 기록물 관리기준의 명확화(안 제25조 및 제26조)

- (1) 기록물의 보존기간 책정, 공개여부 등 기록관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기록관리기준표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고, 보존기간의 구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보존기간의 기산시점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 (2) 업무과정에 기반을 둔 기록관리기준표를 작성·운영하도록 하고, 단위과제별 보존기간의 변경절차를 규정하고, 기록물의 보존기간을 보존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1년으로 하며, 주요 기록물에 대한 장기보존의 분류근거를 명확히 함.
- (3) 기록물의보존업무가 업무과정에 따라 효율적으로 수행되고,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바. 전자기록물 중심의 기록관리 절차 체계화(안 제35조 내지 제54조)

- (1) 전자기록물의 보존 및 진본성 유지를 위한 절차의 구체화와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방식 및 보존매체 수록 기준이 필요함.
- (2) 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의 인수·보존·보존매체 수록·서고관리·이관 및 폐기 등의 절차를 전자기록물을 중심으로 구체화함.
- (3) 전자기록물의 안전한 관리 및 보존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사. 기록물관리기관의 시설·장비 및 기록매체 기준의 구체화(안 제60조 및 제61조)

- (1)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기록물관리기관별 시설·장비 기준을 구체화하고, 기록물의 장기 보존을 위한 기록재료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 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시설·장비 기준을 정하고, 매년 5월말까지시설·장비 및 환경 구축 현황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통보하도록 하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의 장기적 보존에 필요한 기록매체 및 용품의 규격을 제정·개정 및 보완하도록 함.
- (3)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에 적합한 시설의 인프라 구축 및 장기보존용 기록재료의 품질 보증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아. 기록관리현황 평가제도의 도입(안 제63조)

- (1)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록관리현황에 대한 평가 절차 및 결과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 (2)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현황을 평가하고,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 (3) 공공기관의 장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 기록물관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자. 비밀기록물의 체계적 관리(안 제66조 내지 제71조)

- (1) 비밀기록물 생산시의 보존기간 책정 방식을 구체화하고, 비밀이 포함된 기록관리기준표에 대한 관련 정보의 보안대책이 필요하며,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비밀기록물의 처리방식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 (2) 비밀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전용시설 설치, 전담요원 배치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며, 비밀기록물 생산과 동시에 보존기간을 책정하도록 하고, 비밀기록물의 기록관리기준표, 비밀해제 기록물의 정리·공개 및 생산현황 통보 방식 등을 정함.
- (3) 비밀기록물의 무단 폐기를 방지하고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도록 함으로써 비밀기록물의 안전한 관리 체계의 구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차. 기록물의 공개 및 열람의 확대(안 제72조 내지 제74조)

- (1) 기록물의 공개여부 분류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 공개가 제한되는 기록물에 대한 처리절차 및 기록물공개심의회 구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2) 공공기관이 기록물의 공개여부를 재분류하여 이관하는 경우에는 비공개 기록물의 비공개 사유 및 공개가능 시기 등을 함께 제출하고, 비공개 기록물에 대한 제한적 열람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며, 기록물공개심의회 위원 중 4인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함.
- (3) 국민의 알권리신장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비공개기록물의 공개 또는 비공개의 객관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카. 기록물관리의 표준화(안 제75조 내지 제77조)

- (1) 기록물의 체계적·전문적 관리와 기록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표준화 대상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개정, 폐지 절차 및 표준의 확대 보급 방안을 정하고, 표준화 업무의 전문성 및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 (3) 기록물의 효율적·통일적 관리가 이루어지고, 기록관리 표준화 업무의 전문성 및 객관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타. 기록물관리의 전문성 강화(안 제78조 및 제79조)

- (1) 기록물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요원의 자격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인력구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교육과정 운영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을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등으로 정하고, 기록물관리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 및 국내외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3) 기록물관리의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파. 민간 중요기록물의 지정 및 수집(안 제80조 내지 제84조)

- (1)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에 대한 체계적인 수집·관리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 (2) 국가적 관리가 필요한 중요 민간기록물을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 등에 30일 이상 예고한 후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도록 하고 지정의 해제절차와 이에 따른 변동사항 등 관리절차를 규정함.
- (3) 국가 중요기록물의 종합적 보존·활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국가지정기록물의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농림부령제1555호, 2007.3.28공포]

1. 개정이유

「친환경농업육성법」의 개정(법률 제7996호, 2006. 9. 27. 공포, 2007. 3. 28. 시행)으로 인증종류별 인증기준이 신설 또는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친환경농자재의 사용기준 개선(안 제7조 및 별표 1)

- (1) 일부 친환경농자재의 사용기준이 국제기준에 부합되지 아니하고, 유통 중인 자재 중 친환경농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재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여 친환경농업 실천농가가 자재선택을 하는데 애로가 있음.
- (2) 친환경농자재의 사용기준을 국제기준에 일치시키고, 농촌진흥청장은 농자재를 생산 또는 판매하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 해당 자재의 제조 공정, 주성분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친환경농산물 중 유기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자재로 판단되는 경우 그 제품의 명칭과 주성분 등 관련 정보를 공시할 수 있도록 함.
- (3)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친환경농자재 사용기준의 설정으로 국내 친환경농업의 국제적 위상이 제고되고, 친환경농자재의 주성분 등 관련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자재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됨.

나. 인증기관의 재지정 요건과 절차 마련(안 제13조의2 신설)

- (1)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후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는 요건과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음.

- (2)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만료90일 전까지 재지정신청을 하도록 하고, 재지정 심사는 신규지정과 같은 요건 및 절차에 따르도록 하되, 지정 당시와 인력·장비 또는 업무규정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대한 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3) 인증기관 재지정의 요건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재지정 업무에 대한 투명성이 제고되고 인증능력 미달자의 인증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인증기준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마련(안 제20조제2항 및 별표 7의2 신설)

- (1) 친환경농산물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 또는 해당 인증품의 유통·판매업자의 인증기준 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 인증기준 위반의 내용 및 횟수에 따라 인증품의 유통·판매업자에 대하여는 7일 내지 1개월의 인증품 판매금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1개월 내지 9개월의 친환경농산물 표시사용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
- (3) 행정처분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행정처분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친환경농산물의 부정유통 방지와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인증수수료 현실화(안 별표 8)

- (1) 최근 5년간 인증수수료가 동결됨에 따라 인증기관 운영이 활성화되지 못하여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및 물가상승율 등을 감안하여 인증수수료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 (2) 인증신청 수수료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고,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 수수료를 1만5천원에서 5만원(유기농산물의 경우에는 2만5천원)으로 인상함.
- (3) 인증기관의 운영수지 개선으로 민간인증이 활성화되고, 국가기관이 수용하기 어려운 인증수요를 민간기관이 상당부분 흡수할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③ 소비자보호법시행령 전부개정령[대통령령제19958호, 2007.3.27공포]

1. 개정이유

국가의 소비자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은 소비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소비자단체의 등록업무를 재정경제부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하며, 소비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물품 및 용역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 및 권익침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하여 집단분쟁조정 및 단체소송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비자보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7988호, 2006. 9. 27. 공포, 2007. 3. 28. 시행)됨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소비자단체의 등록요건, 위해정보의 수집·관리, 집단분쟁조정 및 단체소송 등에 관하여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비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안 제12조 및 제13조)

- (1) 법률에서는 소비자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 마다 수립하도록 하면서 그 수립 및 변경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 (2) 재정경제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계획은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도록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토대로 기본계획의 성과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기본계획의 변경에 반영하도록 함.

나. 소비자단체의 등록요건(안 제23조)

- (1) 법률에서 위임된 소비자단체의 등록요건을 소비자단체의 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전산장비 및 사무실과 상근인력 5명 이상으로 정함.

- (2) 소비자단체의 등록에 필요한 최소한의 설비와 인력 요건을 정함으로써 소비자단체의 등록과 관련된 불필요한 분쟁을 해소하고, 등록업무가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다. 소비자안전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는 위해정보의 내용 및 소비자안전센터의 위해정보의 관리(안 제39조 및 제40조)

- (1) 법률에서는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소비자안전센터가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관한 위해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해정보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 (2) 경찰서·소방서·보건소 등 행정관서, 병원, 보건실을 운영하는 초·중·고등학교 등 위해정보 제출기관은 업무상 위해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위해를 입은 소비자의 인적사항, 위해내용 및 위해부위, 위해발생 경위, 사업자의 이름, 위해발생장소 등을 소비자안전센터에 제출하도록 하고, 소비자안전센터는 위해정보를 분기별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소비자안전센터는 위해정보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3년 이상 보관하도록 함.
- (3) 위해정보 제출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소비자안전센터가 위해정보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보관하게 함으로써 위해정보가 체계적으로 수집·관리되어 소비자 피해 확산의 예방과 소비생활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집단분쟁조정 대상 및 절차(안 제56조 내지 제62조)

- (1) 법률에서 위임된 집단분쟁조정 대상사건을, 물품 또는 용역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되는 사건으로 규정하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에 14일 이상 그 절차의 개시를 공고하도록 하며, 집단분쟁조정절차에 추가로 참가하려는 소비자 또는 사업자는 공고기간 이내에 집단분쟁조정절차 참가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2) 집단분쟁조정 대상사건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집단분쟁조정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소액·다수의 피해발생을 특징으로 하는 소비자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제단체의 범위(안 제63조)

- (1) 법률에서는 일정한 단체가 사업자의 소비자권익침해행위 금지 또는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단체소송제도를 도입하면서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로 소비자단체·비영리민간단체·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 외에 전국 단위의 경제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규정하고 있음.
- (2) 모법의 위임에 따라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전국 단위의 경제단체를 사업자 등을 회원으로 하여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기업경영의 합리화 또는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거나 무역진흥업무를 수행하는 단체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로 규정함.

3.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④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제19935호, 2007.3.16공포]

1. 개정이유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투명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관리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증축을 위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요건 완화(안 제4조의2, 제37조제1항제1호)

- (1) 증축의 경우 사용검사를 받은 후 2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되어야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공동주택의 급수·위생설비 등의 교체와 병행하여 증축을 위한 리모델링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 (2) 급수·위생설비 등이 설치 후 15년이 경과되면 노후화로 교체가 필요한 실정임을 고려하여 사용검사를 받은 후 15년(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중 시·도 조례가 정하는 경우 그 연수)이 경과되면 증축을 위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나.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감리자 지정대상에 감리전문회사 추가(안 제26조제1항제1호)

- (1)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감리는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업무의 신고를 한 자만이 수행할 수 있어 경쟁을 통한 주택품질의 향상을 도모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2) 건축사 외에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축감리전문회사 및 종합감리전문회사도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감리의 감리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함.

다. 공동주택 관리현황의 공개 의무화(안 제56조)

- (1)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관리비 부과내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자의적인 운영으로 입주자간 분쟁을 야기하는 문제가 있음.
- (2)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관리비 등 부과내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입주자 등에게 개별 통지하는 것을 의무화함.

- (3) 공동주택의 투명한 관리를 유도하고 공동주택의 관리에 입주자 등의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기간의 합리적 조정(안 별표 6)

- (1) 시설공사별로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부터 3년 이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체는 그 하자를 보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단기간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 하자담보시설공사 항목에 일부 공사항목 미 반영 등으로 입주자 보호가 미흡한 실정임.
- (2) 주택건설 자재의 내구연한, 하자발생 빈도 등을 고려하여 57개 세부 공사중 타일공사 등 17개 세부공사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각각 1년 연장하고, 주택건설기술의 발달에 의한 공법 변화 등에 따라 20개 세부공사를 하자담보시설공사에 추가함.
- (3)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기간의 합리화로 하자분쟁을 최소화하고 입주자 등의 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마.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과목 조정(안 별표 10 및 부칙 제1조 단서)

- (1)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은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전문성 및 변별력 검증이 미흡한 실정임.
- (2) 제1차시험의 민법총칙과 제2차시험의 민법 과목을 제1차시험으로 통합하고, 제2차시험의 주택관리 관계법규 과목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을 추가하며, 공동주택관리실무 과목에 공동주거관리이론을 추가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함.
- (3) 주택건설기술 변화에 대응하고 주택관리사의 전문성 향상으로 보다 효율적인 주택관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⑤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제544호, 2007.3.16공포]

1. 개정이유

재정융자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종전 재정융자특별회계의 기능을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법」(법률 제 8135호, 2006. 12. 30. 공포, 2007. 1. 1. 시행)과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815호, 2006. 12. 30. 공포, 2007.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재정투융자특별회계의 융자·예탁 및 예수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융자약정 및 융자절차 등 융자계정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통합하여 규정하는 한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총괄계정에서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자금을 예탁하는 절차 등 법률 및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탁절차(안 제6조)

- (1)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총괄계정에서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자금을 예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예탁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 (2)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총괄계정에서 자금을 예탁받으려는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관리자는 사용목적·신청금액 및 예탁기간 등을 기재한 예탁신청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은 예탁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예탁금액 및 예탁기간 등 예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 예탁신청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관리자가 관리기금의 총괄계정으로부터 자금을 예탁받은 때에는 예탁금액 및 예탁조건 등을 기재한 예탁증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3)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총괄계정에서 자금을 예탁하는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예탁절차의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융자절차(안 제10조)

- (1)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융자계정에서 자금을 대여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융자사업과 관련된 기관 간의 융자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 (2) 융자사업을 수행하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월별자금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융자금이 소요되는 달의 전달 15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은 월별자금집행계획서와 관리기금의 융자계정의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월별 융자금액 등을 결정하여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융자기관의 장에게 각각 통지하도록 하며, 융자기관의 장이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융자금차용증서와 영수증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3) 융자사업과 관련된 기관간의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투명하고 책임 있는 융자금의 관리 및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⑥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일부개정령[보건복지부령제389호, 2007.3.9공포]

1. 개정이유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9882호, 2007. 2. 12. 공포·시행)됨에 따라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승강기 등 일부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의 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의 종류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시설의 범위 조정(현행 별표 1 제2호, 제3호, 제23호 내지 제26호 삭제)

-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의 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한 내용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편의시설 설치대상시설의 범위가 조정됨에 따라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횡단보도, 지하도 및 육교, 버스 등 교통시설은 장애인 편의시설의 종류에서 삭제함.

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의 규격 및 내용 정비(안 별표 1 제4호)

-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의 규격과 안내표지에 기재해야 하는 내용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안내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의 규격을 가로 0.7미터, 세로 0.6미터, 지면에서 표지판까지의 높이 1.5미터로 정하고,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에 기재하도록 함.
-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의 규격과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장애인 등의 이용을 위한 승강기 시설기준의 개선(안 별표 1 제9호)

- (1)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승강기의 설치기준이 미흡하여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2) 신축하는 건물의 경우에는 승강기의 폭을 1.6미터 이상으로 하고, 승강기 조작설비를 버튼식으로 하되 시각장애인 등이 감지할 수 있도록 층수 등을 점자로 표시하도록 하며, 승강기 층수의 선택 및 취소에 따른 사항과 출입구 방향에 대하여 음성안내가 나오도록 함.

- (3)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승강기의 구조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개선함으로써 장애인 등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의 구조 등에 관한 설치기준(안 별표 1 제29호 신설)

-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편의시설의 구조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 (2)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은 휠체어 사용자 및 유모차가 접근 가능한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고, 휴게시설에는 수유실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별도로 마련하되, 기저귀교환대, 세면대 등의 설비를 갖추도록 함.
- (3)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을 구조 등 세부기준에 맞게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⑦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제19927호, 2007.3.9공포]

1. 개정이유

지역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혁신발전시행계획 수립지침의 작성·평가 등을 행정자치부장관과 산업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지역 생활여건 개선 및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를 위한 사업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총괄·지원하도록 하며, 국가균형발전시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원활한 협조를 위하여 균형발전추진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행정자치부장관의 역할 강화(안 제7조·제10조 및 제3조제2항)

- (1) 종전에는 지역혁신발전계획·지역혁신발전시행계획이 지역혁신사업 위주로 수립·평가되어 지역개발사업이 국가균형발전시책의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역혁신발전계획·지역혁신발전시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음.
- (2) 앞으로는 지역혁신발전계획·지역혁신발전시행계획의 수립 단계에서 행정자치부장관 및 산업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그 수립지침을 작성하도록 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지역혁신발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은 부문별 국가균형발전시행계획에 대하여 각각 종합평가를 하도록 함.
- (3) 행정자치부장관 및 산업자원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계획의 수립 및 평가를 공동으로 수행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시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나. 지역 생활여건 개선 및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의 추진 근거 및 방법(안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신설)

- (1) 지역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서로 협력하여 지역 생활여건 개선 및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 추진 근거 및 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 (2) 행정자치부장관은 지역 생활여건의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 기본방향에 따라 수립한 연도별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지역 생활여건 개선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국가균형발전계획의 시행 등과 관련하여 추진되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그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함.

다. 지역혁신 및 지역개발에 관한 통계 관리(안 제31조의2 신설)

- (1) 지역혁신 및 지역개발과 관련된 균형발전업무를 총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2) 행정자치부장관 및 산업자원부장관은 각각 구축된 지역개발통계데이터베이스 및 지역혁신통계데이터베이스의 공동이용방안 등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균형발전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33조의2 신설)

- (1)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혁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 연관성 및 사전 조정의 필요성이 높아짐.
- (2) 국가균형발전시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차관 및 산업자원부차관을 공동의장으로 하고, 시·도의 3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협의회의 의장이 임명하는 자를 위원으로 하는 균형발전추진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함.
- (3)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가 균형발전시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⑧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제19925호, 2007.3.9공포]

1. 개정이유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한 경영성과계약제도의 도입 등을 내용으로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법률 제8028호, 2006. 10. 4. 공포, 2006. 10. 4. 시행)됨에 따라 사장의 연임 및 해임기준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방공기업 자산재평가 제

도를 폐지하고 지방직영기업의 대상사업에서 의료사업을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직영기업의 대상사업에서 의료사업 제외(안 제2조제1항제9호)

- (1) 2005년 7월 13일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되면서 의료사업이 지방직영기업의 대상사업에서 제외됨.
- (2) 법률 개정에 맞추어 동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의료사업에 관한 지방직영기업 관련 조문을 삭제함.

나. 지방직영기업에 대한 자산재평가제도 폐지(안 제42조)

- (1) 자산재평가에 따른 감가상각비 증가분이 공공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이를 총괄원가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제기됨.
- (2) 감가상각비 증가분을 총괄원가에 반영하지 아니할 경우 자산재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없어지므로 자산재평가 제도를 폐지함.
- (3) 자산재평가 폐지에 따라 관련비용의 절감이 기대됨.

다. 지방공사 사장의 연임 및 해임의 기준 설정(안 제56조의2 신설)

- (1) 업무성과에 따른 인사운용이 이루어지도록 지방공사 사장의 연임 및 해임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 연임기준은 사장의 업무성과 평가, 기관경영 평가 및 계약이행실적 평가 결과 상위 평가를 받은 경우 및 직전연도에 비하여 현저히 상승한 경우로 하고, 해임기준은 평가결과 하위 평가를 받은 경우 및 직전연도에 비하여 현저히 하락한 경우로 함.
- (3) 지방공사 사장의 연임 및 해임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평가결과에 대한 공정성 및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료출처 : 법제처, <http://www.moleg.go.kr/>]

2007년 중앙부처 주요업무계획(요지)

《재정경제부 소관》

비전 : 풍요로운 나라 함께하는 선진경제 고품질 정책으로
신뢰받는 재정부

1. '07전략 · 성과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

① 경제안정 기조의 정책

-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
 - 上底下高의 경기흐름에 대응하여 거시정책을 경기보완적으로 운용
- 금융부문 리스크에 대한 주요 금융지표를 선정 · 발굴 일일단위 점검
- 부동산 시장의 안정기반 구축

② 성장잠재력 확충

-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10대부문 115개과제)의 분기별 이행실태 점검
-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 R&D 사업 등 미래성장 동력 확충
- 서비스산업의 신성장 동력화
 -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 서비스산업 육성 중장기 로드맵 마련

③ 경제 · 사회적 격차완화

-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등 계층간 격차 완화
- 지역특구 지정 확대등으로 지역간 격차 완화
- 중소기업 관련 금융시스템 선진화 등 부문간 격차 완화

④ 바람직한 조세체계의 구축

- 지속가능하고 폭넓은 경제성장을 위한 세제지원과 조세제도의 선진화를 통해 세제의 경쟁력 제고

⑤ 금융체계의 선진화

- 전자증권제도의 도입 등 자본시장의 효율 제고
- FTA 체결 등 금융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토대 구축
- 금융중심지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제정 등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
- 테러자금조달금지법 제정 등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의 선진화

⑥ 재정 건전성 증진

- 중장기적 국가채무관리계획 수립 등 국고관리의 효율화
- 재정제도 선진화 및 국유재산 효율화

⑦ 대외개방과 경제협력 강화

- 대외통상 및 금융협력 강화와 외국인투자 환경 개선
- 알제리, 쿠웨이트 등 對개도국 경제협력 활성화
- 선진형 국제수지 구조의 기반 마련

⑧ 미래에의 대비강화

-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정책추진과 남북경제 협력 증진을 위한 중장기 전략 마련

2. '07 중점추진 혁신과제

- ① 정보화를 통한 업무효율성 제고 및 민간의 전문역량 활용 확대**
- ② 외국계 금융기관과 상시적 온라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직접 찾아가서 애로사항 해결 지원**
- ③ 자금세탁 협의거래정보에 대한 통합정보 분석시스템 구축**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비 전 평생학습 능력개발을 통한 인적자원의 양적·질적제고

1. '07전략·성과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

① 초·중등학교의 교육력을 강화 공교육의 신뢰도 제고

- 학교를 믿고 학생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환경 조성
- 학생·교사 및 학부모 모두가 만족하도록 교수·학습방법 개선
- 영어교육을 혁신하여 영어활용 능력 국제화

② 세계수준으로 고등교육의 수월성 확보

- 구조개혁 지원을 통한 대학특성화를 정착
- 대학교원 및 대학원생에 대한 연구지원을 통해 교수·연구역량을 국제수준으로 제고
-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서 전문대학의 역할을 강화

③ 인적자원개발 및 평생직업교육체제를 구축 국가성장 기반 강화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인적자원의 경쟁력 제고
- 평생학습기반 확충을 통해 성인을 위한 양질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

④ 교육안전망을 구축하여 교육격차를 완화

- 방과후 학교를 통한 소외계층 지원율과 수요자 만족도를 제고
- 소외지역·계층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
- 특수교육 지원체제를 확대 구축 장애인의 교육복지 수준 향상

⑤ 교육·인적자원분야의 국제적 역할을 강화

- 개발도상국에 대한 교육수출 및 교육분야 개발원조를 확대
한국의 교육발전 경험을 전수·보급
- 외국인 유학생 유치·확대 등을 통한 해외 인적자원 개발을
활성화하여 교육의 국제화를 달성
- 국제기구에 적극 참여하여 한국교육의 선진화를 촉진

2. '07 중점추진 혁신과제

① 온라인 정부업무관리시스템 활성화

- 업무관리 조기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직 구성
- 문서관리, 일정·일지관리, 회의·지시관리 활성화

② 인터넷으로 학부모에게 자녀(초·중·고)의 학교생활정보 제공

- 공인인증서 발급을 통해 가정, 직장 등 언제·어디서나
자녀의 성적 등 학교생활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진학, 진로정보 등 초·중·고등학생별 맞춤형 분석자료 제공

③ 방과후 학교 확산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

- 농산어촌, 도시 저소득층 등에 대한 방과후 학교 지원확대로
교육과 복지를 연결한 Total 교육으로 발전

④ 시스템을 통한 지방교육의 일하는 방식 혁신

- 행·재정통합시스템을 개발, 시·도교육청 및 각급학교에
구축 지방교육의 행·재정 혁신의 전기 마련
- 낙후지역 등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행정자치부 소관》

비전 : 혁신 · 분권 · 균형을 실현하는 일류 행정기관

1. '07전략 · 성과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

① 정부혁신으로 세계 10위권의 정부효율성 구현

- 지속가능한 자율혁신 기반강화, 대국민 민원행정서비스 품질 제고
- 정부혁신 성과의 공유 및 확산, 자율과 성과중심의 정부조직 관리
- 범정부적 기록관리 혁신체제 정착

② 국민과 함께하는 전자정부 세계 선도국가 실현

- 차세대 전자정부 추진전략 수립, 성과중심의 전자정부 사업 추진
- 국민에게 다가가는 전자정부 서비스 확대
- 안전하고 신뢰받는 전자정부 구축, 전자정부 발전 인프라 강화

③ 자율 · 책임 · 협력 · 통합의 선진 지방자치 실현

- 지방분권의 정책 · 발전, 분권을 뒷받침하는 자치역량 강화
- 자율에 걸맞는 지방행정의 투명성 · 책임성 제고
- 참여 · 협력 · 통합의 뉴거버넌스 구현
- 주민과 성과중심의 지방행정혁신 추진

④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건전한 지방재정 구현

- 재원의 불균형 개선과 지방재정 확충
- 재정운영의 투명성 · 효율성 · 책임성 제고
- 편리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인프라 혁신
- 주민에게 유용한 생활기반 정보 서비스 제공
-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용 지원

⑤ 개성있고 활력있는 지역균형발전 구현

- 지역균형발전 총괄지원·조정강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의 성공적 추진
- 지역의 종합적 생활여건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공기업 혁신
- 낙후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

⑥ 활기차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 건전한 공직노사문화 조성
-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여건 마련
- 공직윤리제도의 실효성 강화

⑦ 선진국 수준의 재난·안전관리 체계 확립

- 국민수요에 부응한 안전관리 제도화
- 국가기반체계의 보호관리시스템 발전

2. '07 중점추진 혁신과제

① 온-나라시스템(On-nara BPS) 활성화

- 온-나라 시스템 활용교육 및 학습동아리 운영으로 사용자 편의성 제고
- 관련 시스템간 연계체계 지속 구축

②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 시·군·구의 행정조직 개편 및 동향서비스 제공
-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개통 및 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③ 대통령 기록물 이관·관리체계의 혁신

- 프로세스 재설계를 통한 대통령 기록관리 시스템 구축
- 대통령 기록물의 이관·관리체계 혁신 이행

《문화관광부 소관》

비전 문화로 부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

1. '07전략 · 성과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

① 디지털화 · 융합 환경에 부응하는 콘텐츠 산업의 핵심역량 강화

-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 프로듀서·마켓터, 글로벌 비즈니스 등 현장수요중심 맞춤형 인력 양성
- 저작권 기반의 산업환경 조성
 - 저작권 정보센터, 디지털 저작권거래소 설립, 라이선스 관리개선
- 미디어의 균형발전과 공익성 제고
 - 「신문법」과 「잡지등 정기간행물법」 분리, 신문공동배달 확대

② 우리 문화의 보존·활용 전략적 세계화 추진

- 민족 문화자원의 현대적 활용 및 문화정체성 정립
 - 전통사찰보존(127개소), 불교 텍스트 DB구축 등(139억원)
- 해외문화 활동 지원시스템 강화, 주요국가 문화교류 확대
 - 재외문화원 특화 확대, UN총장 취임계기, 문화사업 적극추진

③ 국민문화향유 확대로 사회전반에 문화가치 확산

- 국민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제도화
 - 문화체육시설(11개소), 도서관(46개소), 박물관·미술관(25개소), 문화회관(14개소), 마을단위 작은 도서관(70개소) 건립
-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자생적 문화역량 강화
 - 천안, 제천, 안동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30억원)
- 인간과 문화중심의 생활공간 조성
 - 행정중심복합도시, 구 서울역사 복원 등 문화 페러다임

④ 기초예술의 창조적 다양성제고

- 예술진흥을 위한 「예술진흥법제정」 등 추진체계 정비
- 예술진흥 재원의 다변화(민간창투사, 중기청 모태펀드)
- 예술장르별 지원 강화, 예술 창작·유통의 경쟁력 제고

⑤ 동북아 관광의 중심국으로 우뚝서는 한국관광실현

- 세계적 수준의 관광서비스 기반 구축
 - U-travel city구축(보령, 통영), 우수여행상품 인증제
- 지역별 특화된 관광자원의 개발확충 및 내실화
 - 관광자원의 개발에 관한법률 제정, 광역권관광개발사업 근거마련
- 미래형 관광레저도시 조성(태안, 무주, 서남해안)

⑥ 스포츠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 국민생활체육 확대(스포츠 7330 캠페인, 국민체력 인증제)
- 경기력 향상 및 스포츠교류 증대(훈련비 확대, 평창유치)
- 스포츠 산업의 육성기반 강화(스포츠산업 진흥법 제정)

2. '07 중점추진 혁신과제

① 새로운 일하는 방식정착으로 정책효율성 제고

- 업무관리시스템 조기정착, 통합 성과관리 체계 운영내실화

② 소통과 협력중심의 혁신과제 추진

- 미래문화전략 2030수립, 혁신공통과제 추진

③ 문화맞춤형 변화관리 강화(명상프로그램, 주제별 특별학습)

④ 자기주도형 학습문화 정착(상시학습체계 정착, 국제전문인재 양성)

⑤ 고객체감형 혁신과제 홍보 확산

⑥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한 유관기관 혁신지도

《농림부 소관》

비 전 농식품 세계일류, 농촌 Global Top 10

1. '07전략 · 성과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

① 농업 개방확대에 대응한 농정시스템 체계화

- 농업협상 대응 및 국제협력 강화(FTA, DDA협상)
- 농업·농촌 종합대책 조정(119조원 투자, FTA이행특별법 개정)
- 맞춤형 농정체계 정립(규모화 촉진, 직불제 확충, 농가등록제)
- 시장지향적 양정제도 정착, 현장중심의 농정협력 시스템 구축

② 소비자에게 안전한 고품질 농식품 공급

- 식품산업 육성(식품산업진흥법 제정, 한식세계화 추진)
- 고품질 브랜드 농산물 공급(식품규격 제정, 지리적 표시)
- 농산물 안전관리시스템 및 가축질병방역 체계 구축
 - GAP, HACCP, 이력추적제도, NSC위기관리 매뉴얼 및 SOP보완
- 수입농산물 관리체계 강화(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 자연순환형 친환경 농업육성(1000ha규모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③ 농업체질 강화 및 경쟁력 제고

- 농업인력 확보 및 역량 확충, 신성장 동력 확충
 - 생산과 소비 연계, 13년까지 식품·외식산업 110조원 달성
- 수출유망품목 발굴·육성(멜론, 토마토, 딸기 등)
- 농산물 물류효율화, 협동조합 경제사업 활성화

④ 농업인 소득향상 및 경영안정 강화

- 직접지불제 확충(밭농사, 과수, 축산까지 포함 추진)
- 경영회생지원 시스템 활성화(농지은행, 저리대체자금 추가연장)
- 재해대비 경영안정장치 확충(정책보험 대상품목·축종 확대)
- 안전 영농기반 구축(수리시설 보수 보강, 31천ha배수개선 사업)
- 선진 농업금융 지원시스템 구축(정책자금 시중은행 취급 확대)
- 생산자 자율적 수급조절 강화(최저보장가격제도)

⑤ 도시민과 상생하는 활력있는 농촌구현

- 체계적인 농촌지역 개발, 농촌 의료·교육·복지여건 개선
- 도·농교류 및 도시민 농촌유치(도농교류법 제정, 전원마을 조성사업 개선)
- 농촌자원의 산업화,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체험마을 조성 등)

2. '07 중점추진 혁신과제

① 농지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각 기관 분산관리하고 있는 농지·농촌용수 및 토양정보 통합
- 금년중 농지 및 농촌용수 통합, 08년이후 토양정보 통합

② 디지털 가축방역 통합시스템 구축

- 전염병 발생자료, 예찰방역 및 대응시스템 통합
- 가축위생 발생정보 프로그램 통합 및 재난관리시스템 연계

③ 식물 병충해 원격진단 네트워크 구축

- 농산물 등에서 발견된 병충해를 신속·정확하게 진단, 대응
- 검역소·대학 및 연구기관 등 전문가들이 Web 영상진단

《보건복지부 소관》

비전 : 국민누구나 건강하고 행복이 넘치는 희망사회 실현

1. '07전략 · 성과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

① 사회안전망 내실화를 통한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

- 기초생활 보장체계 정비
 - 저소득층 의료보호 확대, 무보증 창업자금 대출확대
-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과 소득보장 강화
 -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서비스(22천명), 복지인프라 및 시스템 개선
-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 강화
 -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조직개편 전면시행('07. 7)

② 건강투자확대를 통한 국민건강 수준제고

- 공공보건의료 기능강화를 통해 국민건강 보장기반 확충
 - 보건·의료·복지종합서비스를 광역단위 지역연계 시스템으로 개편
- 예방중심의 포괄적 국민건강관리 체계 구축
 - 방문보건전문인력 배치(2천명), 생애전환기(16·40·66세) 건강검진 실시
- 건강보험 혁신 및 투자확대를 통한 국민건강 수준 제고
 - 중증·고액환자 본인 부담상한제 확대, 임신부 사전검사 건강보험 적용 등

③ 인적자본 투자 확대 및 사회서비스 확충

-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수립 추진 - 저출산·고령화 영향평가제 도입 등
- 출산·양육지원 확대를 통한 건강한 미래세대 육성
 - 신생아도우미 지원, 아동발달 지원계좌 도입, 아동보호 인프라 확대
- 13개 사회서비스 분야에 1조 3천억원 투입, 64천개 일자리 창출

④ 보건의료산업 육성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 보건산업을 미래성장 동력으로 육성
 - 보건의료 R&D추진 : 1,620억원(보건의료기술연구, 질병관리분야 등)
 - 유전자 검사 등 합리적 규제체계 마련, 민간 생명윤리 역량강화
 - 보건의료산업 육성법(가칭) 제정 및 보건의료 규제합리화 추진
- 보건의료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
 - 의료기관 경영합리화를 위해 의료법 전면 개정
 - 의료기관 채권제도 도입과 해외환자 유치사업 본격 추진
 - 영양상담·건강정보 제공 등 Total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2. '07년 역점추진 혁신과제

① 온라인 정부업무관리 시스템 활성화

- 업무관리시스템에 의해 일하는 방식 및 상시적 학습문화 정착

② 전자바우처 도입을 통한 사회서비스 관리의 효율성 제고

- 지역사회 혁신사업 등 바우처 지원 서비스의 구매·결제 전산화 추진

③ 노인 적합형 일자리 개발·활성화

- 노인주유원, 노인시험감독관 등 일자리 개발로 활기찬 노후여건 조성

④ 기초생활제로 수급자 관리의 적정성 제고

- 상시적·계획적 수급자 조사 체계 마련 등 수급자관리 적정성 마련

《건설교통부 소관》

비 전 : G-10 수준의 건설교통 행정서비스 구현

1. '07전략 · 성과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

①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균형국토 실현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본격 추진, 기업도시 개발 추진
 - 상반기 중심행정타운 마스터플랜 마련, 07. 7월 공사착수,
- 낙후지역 등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 중소도시를 특성과 잠재력을 감안한 전문기능도시로 육성

② 선진주거 복지구현 집값 안정

- 양극화 해소를 위한 주거복지 강화, 주택 · 토지수급 안정화
 - 국민임대주택 11만호, 고령자용 시범사업 및 주거안정법 제정
-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기회 확대
 - 용적율조정, 분양원가 공개, 상한제 확대, 청약제도 가점제

③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U-city기반구축, 경관법 제정, 특별건축구역, 인증제도 운영
- 인간과 환경을 중시하는 친환경 도시개발
 - 압축형 신도시 도입, 생태계 면적율 개념 도입, 공동구 설치 활성화

④ 동북아 물류를 선도하는 교통 · 물류강국 건설

- 고속도로 건설 및 해외진출 등 적극 추진
 - 물류체계 개선(자가 → 가업), 고속철도 기술 등

- 철도산업 경영개선 및 선진화 추진
- 항공자유화 추진 등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
 - 글로벌 항공네트워크 구축, 인천공항 2단계 공사

⑤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SOC기반 구축

- 반일 생활권 실현을 위해 SOC를 지속 확충
 - 4차로 이상 국도비율 44%로 제고, 고속도로4개 구간 개통
- 교통체계 효율성 강화 및 선진화(교통세 '09까지 연장 등)
- 친환경·체계적인 수자원관리 추진
 - 하천환경정비사업, 물관리기본법 제정, 물관리위원회 설립

⑥ 누구에게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

-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 지속적으로 확충, 대중교통활성화
-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⑦ 건설산업을 선진화하고 기술경쟁력 강화

- 건설교통기술 R&D 효율성 제고, 건설기술 경쟁력 강화
- 해외건설 중흥을 위한 지원 강화

2. '07 중점추진 혁신과제

①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위한 실시간 환승정보시스템 구축

- 교통수단 및 경로를 한번에 알 수 있는 전국단위 시스템 구축

② 항공물류 선진화를 위한 민간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각 물류주체별 항공물류정보를 종합·공유하는 시스템 구축

③ 전월세 지원센터 운영

- 부동산 매물정보, 관련 법률·금융상담서비스를 온·오프라인으로 One-stop 제공하는 「전월세 지원센터」 구축

《해양수산부 소관》

비 전 : 세계 5대 해양강국(G5) 도약(2016 년)

1. '07전략 · 성과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

① 해양영토 체계적 관리와 생명력 넘치는 바다 구현

- 안전하고 친환경적 연안공간 조성
 - 연안 용도구역제도입 및 연안정비 사업 추진, 해수욕장관리업 제정
- 해양환경 관리제도 정비 및 오염원 해양유입 통제강화
 -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해양유입 쓰레기 관리책임제 도입

② 세계 물류시장을 선도하는 동북아 물류허브 도약

- 급증하는 대중국 화물처리위한 지역거점 항만 개발
 - 수도권 : 인천신항 개발착수, 인천북항(2선석) 및 평택 · 당진항(6선석) '07년 완공
 - 목포 · 군산 · 대산항 등을 서해 중남부권 물류중심기지로 개발
- 항만관리체제의 고도화를 통한 항만 서비스 및 생산성 향상
 - 평택 · 당진항 노무상용화 도입, 첨단항만 물류시스템 구축

③ 수산업 자생력 확보 및 어업인 삶의 질 향상

- 수산자원 조상사업 : 바다목장(151억엔), 수산종묘방류(118억원)
- 수산업·어업인 경영지원 : 영어자금(13,969억), 부실수협 경영개선(623억)
- 살기좋은 어촌건설 인프라 확충
 - 어촌체험마을(112곳), 어촌관광단지사업(11곳), 어촌관광거점모델 개발(414억)
 - 국가어항(5개), 지방어항(10개) 완공 및 어촌지역 개발 리더양성

④ 고품질의 안전한 수산물 안정적 공급

- 친환경 양식기반 확대 및 수급조절 기능 강화
 - 송어, 뱀장어 가공시설(21억), 시설현대화 사업(60억), 인공산란장(4억) 등
-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유통체계 개선
 - 수산물 가공·저장시설 설치(114억), 저장·가공업체 융자(1,344억)

⑤ 초일류 해운서비스 산업 육성

- 국제해운의 경쟁력 제고와 전문인력 육성
- 연안해운 현대화로 연안 여객선 서비스 개선
- 해양안전 통합관리체제 구축

⑥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을 통한 신해양산업 창출

-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 확충 : 공모사업(325억)
- R&D 성과의 실용화를 통한 산업화 촉진
- 친환경문화 확산을 위한 해양문화·관광인프라 확충
- 과학방송채널 설립, 지방테마 과학관 지속 확충

2. '07년 역점추진 혁신과제

① 온라인 정부 업무관리 시스템 활성화

- 보고·결재시스템 정착, 공시회의 및 장·차관 지시 온라인 통합관리

② 금융시스템을 통한 국제물류 거점 확보

- 글로벌 물류사업단 발족, 국제물류 펀드 조성(1조 5천억원 목표)

③ GIS기반 e-어장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민원서비스 제고

- 전국연안 면허어장 정밀측량('07~'11)DB화 e-어장관리시스템 구축

④ 해양안전종합 정보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해상안전 확보

- 선박에 위치자동 발신장치 설치 의무화 등 다양한 정보제공

4.25 재·보궐선거 관련

1 4.25 재·보궐선거 실시위원회 현황

□ 道內 지역(3개 선거구/3명)

선 거 명 (선거구명)		선거관리 위 원 회	재·보 해·당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 주소		전 화 번 호	
						일 반	FAX
서산시장재선거		서산시	서산시 소읍·면·동	충남 서산시 읍내동 265	(우) 356-805	041) 665-4400	041) 665-4829
충청남도 의회의원 재선거	금산군제 2선거구	금산군	금성면, 제원면, 군북면, 진산면, 복수면, 추부면	충남 금산군 금산읍 상리	(우) 312-803	041) 753-6673	041) 751-0668
금산군 의회의원 재선거	금산군 다선거구		금성면,진산면, 복수면	27-18			

□ 道外 지역(52개 선거구/53명)

- 국회의원선거(3) : 대전(서구을), 경기(화성), 전남(무안·신안)
- 기초지방단체장선거(5) : 서울(양천), 경기(양평,가평,동두천), 경북(봉화)
- 광역의원선거(8) : 서울(송파4), 대구(서구2), 광주(남구1), 경기(가평2,안산5), 전남(나주2), 경남(고성2), 제주29
- 기초의원선거(36/37) : 서울(광진라,강서사,강동라), 부산(영도라,동구나,남구나,다,사하다), 대구(남구가,수성나), 인천(남동라,서구마)광주(서구가-2명,다,남구가), 대전(중구나,서구다), 울산(동구나), 경기(안성가), 충북(괴산가), 전북(정읍바,순창다), 전남(여수다,순천마), 경북(포항북구다,영주가,영천라,경산다,청도가,성주다), 경남(양산가,마산가,진해나,고성라,함안라,거창나)

② 선거관리 기본현황

□ 서산시장 재선거

구분 시·군명		읍·면 · 동수	투표 구수	인구수	선거인수 (예상)	세대수	부재자수 (예상)
서산시		15	53	152,110	115,062	58,072	5,000

□ 충청남도의회 의원 재선거

구분 선거구명		읍·면 · 동수	투표 구수	인구수	선거인수 (예상)	세대수	부재자수 (예상)
금산군	제2선거구	6	14	25,179	21,659	10,951	600

□ 금산군의회 의원 재선거

구분 선거구명		읍·면 · 동수	투표 구수	인구수	선거인수 (예상)	세대수	부재자수 (예상)
금산군	다선거구	3	6	11,971	10,339	5,353	400

※ 상기자료는 예정상황으로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향후 법정선거관리일정에 따라 확정됨.

3 4.25 재·보궐선거 주요일정

시행일정	요일	실시사항	기준일	관계법조
		인구수의 등의 통보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후 15일까지	규§2①
		향토예비군 소대장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	법§60②
12.16까지	토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전 10일까지(등록개시일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는 그 때부터 10일까지)	규§51①②
12.26부터	화	예비후보자 등록	선거일전 120일부터(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는 그 때부터)	법§60의2①
2.11부터	일	예비후보자 등록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부터(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는 그 때부터)	법§60의2①
2.24부터 4.25까지	토 수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전 60일부터(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는 그 때부터)	법§86②
4.6부터 4.10까지	금 화	선거인명부 작성 부재자신고 및 명부 작성	선거일전 19일부터 5일 이내	법§37, 규§10 법§38, 규§11
4.9까지	월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법§53①
4.10부터 4.11까지	화 수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9시~오후5시까지)	선거일전 15일부터 2일간	법§49, 규§20
4.14까지	토	선전벽보·부재자용 책자형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후 3일까지	법§64②, 65⑤ 규§29④, 30④
4.16까지	월	선전벽보 첩부	제출마감일후 2일까지	법§64② 규§29②⑤
		부재자 투표용지 및 안내문 발송 (책자형 선거공보 동봉)	선거일전 9일까지	법§65⑤, 154①⑤ 규§77
4.17까지	화	책자형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후 6일까지	법§65⑤ 규§30④
4.18에	수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7일에	법§44
4.20까지	금	투표안내문 발송 (책자형 선거공보 동봉)	선거인명부확정일후 2일까지	법§153①②, 65⑤ 규§76
		개표소 공고	선거일전 5일까지	법§173
4.25	수	투 표 (오전6시~오후8시까지)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선거일	법 10장 법 11장
5.5까지	토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일후 10일까지	법§122의2③ 규§51의3①
5.25까지	금	기탁금 반환 및 공제명세서 송부	선거일후 30일 이내	법§57① 규§25①
		선거비용 수입·지출보고서 제출	선거일후 30일까지	정금법§40①
6.24까지	일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후 60일 이내	법§122의2① 규§51의3②

[자료출처 :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부록1 : 1/4분기 의정자료실 도서구입 현황

분야	도 서 명	저자명	출판사	비 고
	총 계	156권		
정 치 / 행 정	지방의회행정론	문재우	대영문화사	
	행정법총론	고영훈	법문사	
	정부관료제	박천오	법문사	
	기획론	정덕주	대명	
	국회의원학	한만봉	한국학술정보	
	행정정책 기획론	한만봉	한국학술정보	
	행복 대한민국 공무원이 간다	맹한승	프리미어프레스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개정판)	최장집	후마니타스	
	소방학개론	김영수	신광문화사	
	이벤트 기획	류영호	대왕사	
	고추장 책으로 세상을 말하다	고병권	그린비	
	현대 행정법 강의	한견우	신영사	
	(2007)소법전	조상원	현암사	
	닥쳐라 일본인	밥 해밀턴	지상사	
경 제 / 경 영	전쟁의 기술	로버트그린	웅진지식하우스	
	에너지 버스	존 고든	쌤앤파커스	
	인생은 경제학이다	공병호	해냄출판사	
	(어린이를 위한)배려	전지은	위즈덤하우스	
	배려의 기술	지동직	북스토리	
	회사가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50가지 비밀	신시아 샤피로	서돌	
	프린세스 마법의 주문	아네스 안	위즈덤하우스	
	컬처 코드	클로테르 라파이유	리더스북	
	굿바이 게으름	문요한	더난출판사	
	아버지의 가계부	제윤경	티비	
	피드백 이야기	리처드 월리엄스	토네이도	
	성공하는 여자는 대화법이 다르다	이정숙	더난출판사	

분야	도 서 명	저자명	출판사	비 고
경 제 / 경 영	나의 백만장자 아저씨	리처드 폴 에반스	작가정신	
	밀리언 달러 티켓	리처드 파크 코독	마젤란	
	소통	박태현	웅진윙스	
	맛있는 대화법	이숙영	스마트비즈니스	
	크런치 포인트	브라이언 트레이시	황금나침반	
	한국의 기획자들	기획이노베이터그룹	토네이도	
	성공의 지혜	탄쥐잉	디앤씨미디어	
	끈기의 기술	이시다 준	북돋움	
	인간관계 맥을 짚어라	양광모	청년정신	
	아부의 기술	리처드 스텐걸	참술	
	기요사키와 트럼프의 부자	로버트 기요사키	리더스북	
	비움	미하엘 코르트	21세기북스	
	다산선생 지식경영법	정민	김영사	
	디자인에 집중하라	김현	토네이도	
	CEO의 친구들	진희정	좋은책만들기	
	앞으로 3년 대한민국 트렌드	김민주	한스미디어	
	러브 아카데미	홀거 쉴라게터	21세기북스	
	세상에서 내가 꼭 해야할 일 천명	데구치 히카루	멘토르	
	극단적 미래예측	제임스 켄턴	김영사	
	남보다 10년 먼저 당당한 노후설계	오종윤	동아일보사	
	새로운 미래가 온다	다니엘 핑크	한국경제신문	
	네 꿈에 미쳐라	김상훈	미래를소유한 사람들	
	깊은 긍정	장향숙	지식의숲	
	불가능한 도전은 없다	박금실	스타북스	
	당신의 책을 가져라	송숙희	국일미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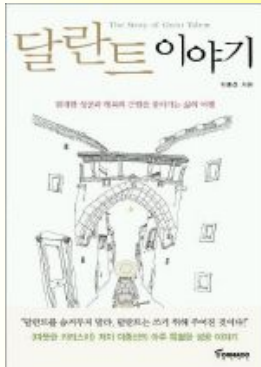
분야	도 서 명	저자명	출판사	비 고
역사 / 인물	로마인 이야기 15 : 로마세계의 종언	시오노 나나미	한길사	
	세기를 넘나든 조선의 사랑	권현정	현문미디어	
	고조선은 대륙의 지배자였다	이덕일	역사의아침	
	엽기 조선풍속사	이성주	추수밭	
	그 위대한 전쟁 1-2(전2권)	이덕일	김영사	
	다시 쓰는 간신열전	최용범	페이퍼로드	
	프리메이슨	폴 제퍼스	황소자리	
	선조, 조선의 난세를 넘다	이한우	해냄	
	문밖을 나서니 갈 곳이 없구나	최기숙	서해문집	
	정감록 역모사건의 진실게임	백승종	푸른역사	
	대한민국사 4	한홍구	한겨레출판	
	알렉산더의 연인	샐사	현대문학	
	도시풍수	최창조	판미동	
	21세기 신 꿈해몽	정용금	브라운힐	
	청와대 풍수논쟁	최세창	돈을새김	
	토정비결	이지함	문원북	
	히스토리카 한국사:고구려.백제 편	히스토리카한국사	이끌리오	
	베트남	편집부	안그라픽스	
	필리핀	크리스 로손	안그라픽스	
	베이징	엘리스 쿤	안그라픽스	
	상하이	브래들리 메이휴	안그라픽스	
	파리	테리 카터	안그라픽스	
	홍콩	스티브 팔론	안그라픽스	
	도쿄	웬디 야나기하라	안그라픽스	
	중국	편집부	안그라픽스	

분야	도 서 명	저자명	출판사	비 고
역사 / 인물	인도	편집부	안그라픽스	
	일본	편집부	안그라픽스	
	호주	편집부	안그라픽스	
	뉴욕	편집부	안그라픽스	
	유럽	편집부	안그라픽스	
	싱가포르	편집부	안그라픽스	
	고대 도시 경주의 탄생	이기봉	푸른역사	
	신선한 나라 조선 1901	지그프리트 겐테	책과함께	
	히피의 여행 바이러스	박혜영	넥서스	
	나만의 스타일 여행	김선경	안그라픽스	
	선비답게 산다는 것	안대회	푸른역사	
	실크로드 문명기행	정수일	한겨레출판	
	어머니	이명박	랜덤하우스코리아	
	천상의 바이올린	진창현	에이지21	
	기쁨의 천마일	박문수	이덴슬리벨	
	스탈린 강철권력	로버트 서비스	교양인	
문학 / 교양	유럽 6	최인호	열림원	
	나비야 청산가자 1-2(전2권)	김진명	대교베텔스만	
	한반도 1-2(전2권)	김진명	해냄출판사	
	산악자전거 가이드	네드 오버랜드	삼호미디어	
	산악자전거 즐겨찾기	레너드 진	크레이지북	
	바보처럼 공부하고 천재처럼 꿈꿔라	신웅진	명진출판사	
	호미	박완서	열림원	
	처음처럼	신영복	랜덤하우스코리아	
	똑똑하게 사랑하라	필 맥그로	시공사	

분야	도 서 명	저자명	출판사	비 고
문학 / 교양	살인의 해석	제드 러벤펠드	비채	
	서른의 당신에게	강금실	웅진지식하우스	
	단 하루만 더	미치 앨봄	세종서적	
	제31회 이상문학상 작품집(2007년)	전경린	문학사상	
	마미야 형제	에쿠니 가오리	소담출판사	
	생애 최고의 날은 아직 살지 않은 날들	정호승	조화로운삶	
	여자의 진짜 인생은 30대에 있다	한경아	미다스박스	
	아주 사적인 시간	다나베 세이코	북스토리	
	바람에 휘날리는 비닐 시트	모리 에토	시공사	
	바티스타 수술팀의 영광	가이도 다케루	예담	
	한니발 라이징	토머스 해리스	창해	
	캐비닛	김언수	문학동네	
	모차르트 세트(전4권)	크리스티앙 자크	문학동네	
	슬롯	신경진	문이당	
	신의 물방울 8-9	아기 타다시	학산문화사	
	호모 엑세쿠탄스 1-3(전3권)	이문열	민음사	
	여행하며 자란 아이가 큰 사람이 된다	이승민	랜덤하우스코리아	
	단골 일반상식	서영학	고시연구원	
	(공사 공단)일반상식	서영학	고시연구원	
	해커스 뉴토익 reading	David Cho	해커스어학연구소	
	해커스 뉴토익 listening	David Cho	해커스어학연구소	
	해커스 뉴토익 보카	David Cho	해커스어학연구소	
	시티 라이더	로버트 허스트	도서관옆출판사	
	내 아이를 위한 일생의 독서계획	저우예후이	바다출판사	
	전략적 책읽기	스티브 레빈	송승하	

분야	도 서 명	저자명	출판사	비 고
문학 / 교양	(모든 인간관계의 핵심요소)아버지	스테판B.폴더	씨앗을뿌리는사람	
	샬롯의 거미줄	엘윈 브룩스 화이트	시공사	
	노란 코끼리	스에요시 아키코	이가서	
	멘사 논리 퍼즐	필립 카터	보누스	
	멘사 위트 퍼즐	로버트 알렌	보누스	
	멘사 시각 퍼즐	존 브렘너	보누스	
	멘사 아이큐 테스트	해럴드 게일	보누스	
	천국의 책방 1-2(전2권)	마쓰히사 아쓰시	예담	
	립스틱 정글 1-2(전2권)	캔디스 부쉬넬	폴라북스	
	아이의 집중력을 키우려면 참을성부터 키워라	박윤조	팜파스	
	알고 마시는 물	주기환	배문사	
	재미있는 물 이야기	이한구	현암사	
	아이 러브 유	이미나	갤리온	
	하루 15분 책 읽어주기의 힘	짐 트렐리즈	북라인	
	영어일기 무작정 따라하기	장계성	길벗이지톡	
	슬픈 예감	요시모토 바나나	민음사	
	(2007년)법전	현암사법전부	현암사	

부록2 : 행복한 책 읽기



- 도서명 : 달란트 이야기
- 저자명 : 이종선
- 출판사 : 토네이도
- 출판년 : 2006년
- 페이지 : 205

특별한 성공과 행복의 달란트를 찾아 나선 사람들의 아름다운 이야기

이 책의 주인공 열하는 성공을 위해 늘 앞만 보고 달리는 엘리트 직장인이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평소 존경하던 회사의 경영자로부터 ‘달란트’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 “누구나 꿈꾸는 성공은, 누구나 꿈꾸는 것이기에 평범한 모습을 하고 있지. 진정 나만의 위대한 성공은 내게 주어진 달란트를 통해 삶을 바꿔나가는 길 위에 존재한다네.” 비로소 열하는 자신이 그저 작은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만족을 추구하는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음을 깨닫는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특별한 성공과 행복으로 이끌어줄 달란트를 찾아 떠난다.

마침내 열하는 세상 곳곳에서 자신의 달란트를 지혜롭게 활용하여 진정한 성공과 행복한 삶을 꾸려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그들과 함께 하는 여행 속에서 마침내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발견하기에 이른다. 이 책은 자신의 달란트를 등불삼아 위대한 성공과 행복으로 향해하는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달란트를 숨겨두지 말라, 달란트는 쓰기 위해 주어진 것이다

세상 모든 존재는 신이 내린 선물, 달란트를 갖고 있다. 다만 그 달란트를 꼭꼭 숨겨둔 채 쓰지 않기 때문에 성공과 행복의 문은 좀처럼 열리지 않는다. 특별한 달란트가 따로 있고, 평범한 달란트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단지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어떻게 진정한 성공과 행복으로 승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 끊임없이 노력하고 도전하는 것이 바로 삶의 과정이다.

이 책은 자신에게 어떤 달란트가 깃들여 있는지조차 모른 채 세상이라는 거대한 유리병 속에 갇혀 하루하루를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삶의 진정성을 깨닫게 해주는 특별한 기회를 선물할 것이다. 주인공 열하의 발걸음을 차근차근 겸허하게 따라가다 보면 어느덧 독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달란트 수첩에 차곡차곡 아름답고 매력적인 달란트들이 쌓여가는 놀라운 경험을 할 것이다.

아울러 깊은 성찰과 깨달음을 통해 발견한 자신의 달란트로 진정한 성공과 행복을 직조해 나가는 지혜에 대해서도 배우게 될 것이다

[자료출처 : 인터넷서점]